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15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총괄 검토의견	5
1. 전부개정 취지 및 필요성	5
2. 법체계와 주요내용	9
IV .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8
1. 총칙(제1장)	18
2. 투표권(제2장)	27
3.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제3장)	29
4. 투표인명부(제4장)	34
5.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제5장)	42

6. 국민투표운동(제6장)	48
7. 투표(제7장)	69
8. 개표(제8장)	74
9.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사항(제9장, 제12장, 제13장)	81
10.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제10장)	90
11.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11장)	98
12. 보칙(제14장)	102
13. 벌칙(제15장)	10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배의원 등 20인
2. 발 의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은 1962년 10월 12일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6차례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제·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 공직선거에서는 폐지된 투표·개표 절차 및 방법이 잔존하고 있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재외투표 외에도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나. 국가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의무 및 투표권자의 성실한 투표권 행사의무,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의 투표편의 제공,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등 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확대함(안 제4조).

다.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함)에 실시하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

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기관·단체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포함하여 상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言)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제외하고 상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사. 정당의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방송연설을, 언론기관과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도를 신설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제한하며, 투표운동이 과열되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집회, 자동차·확성장치,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방법의 투표운동을 제한함(안 제33조·제34조 및 제36조).

자.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사무를 기준으로 명부작성, 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운영,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

신청 등 국민투표관리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

차. 「공직선거법」의 입법례에 준하여 벌칙의 종류를 신설·삭제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각종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Ⅲ. 총괄 검토의견

1. 전부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

국민투표제도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참정권의 일종으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하에서 보완적 역할을 함. 우리 헌정사에서 국민투표는 제2차 개정헌법(1954년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국민투표의 종류는 크게 ①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와 ②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로 나눌 수 있음.¹⁾

국민투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민투표법」은 1962년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5차례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1차례의 유신헌법 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음.

《 국민투표 실시 연혁 》

순번	국민투표일	투표수 (투표율)	찬성수 (찬성율)	사유
1	1962.12.17.(월)	10,585,998 (85.3%)	8,339,333 (78.8%)	헌법개정 (대통령중심제, 비례대표제 도입 등)
2	1969.10.17.(금)	11,604,038 (77.1%)	7,553,655 (65.1%)	헌법개정 (3선개헌)
3	1972.11.21.(화)	14,410,714 (91.9%)	13,186,559 (91.5%)	헌법개정 (유신헌법)
4	1975. 2.12.(수)	13,404,245 (79.8%)	9,800,201 (73.1%)	유신헌법 찬반 및 정부 신임
5	1980.10.22.(수)	19,453,926 (95.5%)	17,829,354 (91.6%)	헌법개정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등)
6	1987.10.27.(화)	20,028,672 (78.2%)	18,640,625 (93.1%)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등)

1) 「대한민국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용어 변경을 위한 타법개정²⁾을 제외하고는 2009년 일부개정 이후 법률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공직선거에서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³⁾ 재외국민⁴⁾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 역시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2009년 법 개정⁵⁾으로 국외에서 선거하는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재외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민투표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의 대상으로 삼아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하는 현행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⁶⁾ 2015년 12월 31

2)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으로 「국민투표법」 조문상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타법 개정이 2016.5.29. 이루어짐.

3) 「공직선거법」은 2020년 법 개정으로 선거권자가 19세 이상 국민에서 18세 이상 국민으로 변경되었으나, 「국민투표법」은 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아 투표권자가 19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다양한 규정과 사전투표제 역시 반영되어 있지 않음.

4)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비슷한 개념으로 재외동포는 재외국민(한국국적)과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를 포함하는 개념임. 참고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에 해당하고,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이므로 재외국민이 아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법 제2조)하고 있음.

5) 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2009.2.12. 일부개정)

6)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4년 8월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헌법재판소 2014.7.24. 선고 2009헌마256 등 판결 》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제72조)와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는 경우(제130조 제2항)에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중략) 선거권이 국가기관의 형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참정권이라면,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직접적인 참정권이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참조). 선거는 대의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인물에 관한 결정'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대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즉,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선거인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되어야 하고,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재외선거인이 국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작성 및 확정, 열람 및 이의신청, 재외투표용지의 송부, 기표 및 회송 등 일련의 필수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재외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투표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재외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에 지나지 않거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충분히 극복가능한 선거기술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처럼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위와 같은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조항은 재외선거인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국, 현재 상황은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나 헌법개정안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진행할 적법한 절차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반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국민투표 시행에 대비하여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개선된 투·개표 제도를 법률에 반영하는 등 「국민투표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2. 법체계와 주요 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 절차,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국민투표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 14개 장, 1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재외국민투표 및 동시 실시 특례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여러 조문을 통합하여 총 15개 장, 108개 조문으로 개편하여 구성하고 있음.

《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체계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투표인의 정의)	제2조(정의)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제5조(인구의 기준)	<u><삭 제></u>
<u><신 설></u>	제5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제6장) 제29조 (운동관계자등의 신분보장)	제6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제6조(국민투표관리)	제7조(국민투표관리)
제2장 투표권	제2장 투표권
제7조(투표권)	제8조(투표권)
제8조(연령산정기준)	제9조(나이산정기준)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제10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제10조(국민투표의 단위)	제11조(국민투표의 단위)
제11조(투표구)	제12조(투표구)
제12조(개표구)	<u><삭 제></u>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

현행	개정안
(제7장)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제14조(국민투표일의 공고)
제4장 투표인명부	제4장 투표인명부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제15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삭 제>
제16조(명부열람)	<삭 제>
제17조(이의신청)	<삭 제>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삭 제>
제19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삭 제>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삭 제>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제16조(명부사본의 교부)
<신 설>	제17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제18조(정보의 제공)
제23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제19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제24조(국민투표공보의 배부)	제20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6장 국민투표운동
제25조(정의)	제21조(정의)
제27조(운동의 한계)	제22조(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제26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제28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3조(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29조(운동관계자등의 신분보장)	(제1장) 제6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신 설>	제24조(단체의 투표운동금지)
<신 설>	제25조(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신 설>	제26조(어깨띠 등 소품)
<신 설>	제28조(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 설>	제29조(인터넷·신문 및 방송 광고)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제31조(언론기관 등의 대담·토론회)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32조(연설회)	제27조(옥내모임에서의 연설회·대담)
제33조(공공시설등의 이용)	
제34조(연설회금지장소)	<삭제>
제35조(소형인쇄물의 배포)	<삭제>
<신설>	제34조(시설물·인쇄물 등의 금지)
제36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36조(투표운동의 제한)
제37조(토론등의 게재금지)	
제38조(허위방송등의 금지)	
제39조(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제15장) 제87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제33조(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제41조(호별방문금지)	제36조(투표운동의 제한)
제42조(서명·날인운동금지)	
제44조(각종 집회등의 제한)	
제43조(음식물제공금지)	(제15장) 제87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5조(공무원등의 출장제한)	<삭제>
제46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제35조(대담·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47조(야간연설회금지)	<삭제>
제48조(특정인 비방의 금지)	제105조(허위사실공표죄)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7장 투표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제1장) 제14조(국민투표일의 공고)
제50조(투표방법)	제37조(투표방법)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삭제>
제52조(투표시간)	제38조(투표시간)
제53조(투표용지)	제39조(투표용지)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삭제>
제5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삭제>

현행	개정안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삭 제>
제58조(투표의 제한)	<삭 제>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삭 제>
제59조(기표절차)	<삭 제>
제60조(기표방법)	<삭 제>
제61조(위원의 참석수)	<삭 제>
제62조(투표참관)	제40조(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제63조(투표소의 출입금지)	<삭 제>
제6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삭 제>
제65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삭 제>
제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삭 제>
제67조(투표의 비밀보장)	<삭 제>
제68조(투표함등의 봉쇄)	<삭 제>
제69조(투표록 작성)	<삭 제>
제70조(투표함등의 송부)	<삭 제>
제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삭 제>
<신 설>	제41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제8장 개표	제8장 개표
제72조(개표관리)	제42조(개표관리)
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삭 제>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삭 제>
제75조(개표개시)	제43조(개표개시)
제76조(투표함의 개함)	<삭 제>
제77조(개표참관)	제44조(개표참관인의 선정)
제78조(무효투표)	제45조(무효투표)
제79조(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삭 제>
제80조(투표지의 구분)	<삭 제>

현행	개정안
제81조(개표록의 작성)	제46조(개표록의 작성 등)
제82조(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제9장 확정	
제84조(중간집계)	
제85조(중간집계록의 작성)	
제86조(집계결과의 공표와 보고)	
제87조(결과의 총집계)	
제88조(국민투표록)	제47조(서류 등의 보관)
(제8장) 제83조(서류등의 보존)	
<u><신 설></u>	<u>제48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u>
제9장 확정	제9장 확정
제89조(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제49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제9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13장) 제7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91조(확정의 공포)	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u><신 설></u>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u><신 설></u>	<u>제51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u>
<u><신 설></u>	<u>제52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u>
<u><신 설></u>	<u>제53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u>
<u><신 설></u>	<u>제54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u>
<u><신 설></u>	<u>제55조(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u>
<u><신 설></u>	<u>제56조(재외투표소의 투표)</u>
<u><신 설></u>	<u>제57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u>
<u><신 설></u>	<u>제58조(재외투표의 효력)</u>
<u><신 설></u>	<u>제59조(재판 관할)</u>
<u><신 설></u>	<u>제60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u>
<u><신 설></u>	<u>제61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u>
<u><신 설></u>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u><신 설></u>	<u>제62조(동시실시의 정의)</u>

현행	개정안
<신설>	제63조(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신설>	제64조(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신설>	제65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신설>	제66조(국외부재자명부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제67조(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신설>	제68조(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신설>	제69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제10장 소송	제12장 소송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제70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제93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제71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제94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제72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제95조(소송절차)	제73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제96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제74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제11장 재투표	제13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제97조(재투표)	제75조(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76조(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9장) 제9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7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12장 투표의 연기	<제13장으로 통합>
제98조(투표의 연기)	제77조(국민투표의 연기)
제14장 보칙	제14장 보칙
제122조(공소시효)	<삭제>
제123조(재판의 관할)	제79조(재판의 관할)
제124조(고발의 의무)	제80조(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
<신설>	제81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신설>	제82조(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제125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제83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신설>	제84조(국민투표관리경비)

현행	개정안
<신설>	제85조(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신설>	제86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3장 벌칙	제15장 벌칙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87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00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삭제>
제101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88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제89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103조(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제90조(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제104조(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제91조(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신설>	제92조(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제105조(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제93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06조(국민투표안등의 부정작성죄)	<삭제>
제10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94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08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제95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신설>	제96조(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제109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제97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10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98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11조(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납입죄)	제99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제100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제113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제101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14조(사위투표죄)	제102조(사위투표죄)
제11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103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신설>	제104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17조(특정인 비방죄)	제105조(허위사실공표죄)
제116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106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118조(사전운동죄등)	
제119조(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10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20조(각종제한위반죄)	

현행	개정안
제121조(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삭제>
<신설>	제105조(양벌규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1장에서는 법률의 입법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법률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장은 투표권, 나이산정기준, 투표권이 없는 사람 등 투표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장에서는 국민투표의 단위, 투표구, 국민투표일의 공고 등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투표인명부 작성, 명부사본의 교부,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등 투표인명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장에서는 정보의 제공,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및 발송 등 국민투표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6장에서는 국민투표운동의 정의, 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투표운동의 제한 등 국민투표운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장 및 제8장에서는 투표방법, 투표시간, 투표용지 등 투표에 관

한 사항(제7장)과 개표관리, 개표개시, 무효투표 등 개표에 관한 사항(제8장)을 정하면서 세부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9장에서는 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국민투표결과의 공포 등 국민투표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0장 및 제11장에서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제10장)와 동시실시의 정의, 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등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11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2장에서는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및 판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13장에서는 투표의 전부무효 및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국민투표의 연기 등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4장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게시물의 삭제, 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보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15장에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국민투표자유방해죄, 투표의 비밀침해죄 등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하에서는 각 장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총칙(제1장)

가. 정의(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투표인 "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 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 헌법개정안 "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3. " 국민투표안 "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이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국민투표안을 말한다.

현행법은 투표인의 정의를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도 투표인의 정의에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개정안은 “투표인”의 정의 외에도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하는 “헌법개정안”과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대통령이 공

고하는 “국민투표안”의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의결되기 이전의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에 부치는 “국민투표안”(중요정책 국민투표+헌법개정 국민투표)은 국민투표 절차에서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의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임.

《 헌법개정 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안의 비교 》

절 차	요 건
헌법개정안 발의	○ <u>국회재적의원 과반수</u> 또는 <u>대통령</u> (헌법§128①)
↓	
헌법개정안 공고	○ <u>20일 이상</u> (헌법§129)
↓	
국회 의결	○ <u>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재적 2/3이상 찬성</u> (헌법§130①)
↓	
국민투표안 공고	○ <u>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u> (현행법§49)
↓	
국민투표	○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 투표, 투표 과반 찬성(헌법§130②)
↓	
공포	○ 대통령이 투표결과 통보받은 즉시(헌법§130③)

나. 투표권행사의 보장(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u>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休務) 또는 휴업(休業)으로 보지 아니한다.</u> ④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고용주는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⑥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투표일 전 7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⑦ 투표권자는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투표권행사의 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학생 또는 피고용자의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 등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만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행사 보장 관련 사항 중 일부를 국민투표에도 도입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피고용자

의 고용주에 대한 투표시간 청구 및 고용주의 해당사항 안내 의무화, 투표권자의 성실 투표 의무 등이 있음.

《 「공직선거법」과 개정안의 비교 》

공직선거법	개 정 안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休務) 또는 휴업(休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 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고용주는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⑥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투표일 전 7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⑦ <u>투표권자는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u>
---	--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피고용자의 투표시간 청구 권한 등은 투표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투표권자의 성실 투표 의무” 규정의 경우 일정 투표율을 요구하지 않는 공직선거와 달리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⁷⁾으로 하여

7)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실효적인 의사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실 투표 의무 조항을 규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제5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u>국민투표일공고일</u>(「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공고한 날을 말한다)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10명 이하의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각각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안은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상 입법례와 유사하게 “공정국민투표지원단”

과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국민투표법」 위반 행위도 함께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상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국민 참여를 통한 부정선거 단속체계를 확립하여 선거범죄 예방과 감시·단속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2000년⁸⁾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고, 2018년 법 개정⁹⁾을 통해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임.

《 「공직선거법」상 입법례 》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 2. 29.>

④ 삭제 <2008. 2. 29.>

⑤ 삭제 <2008. 2. 29.>

⑥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8)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 2000.2.16.)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9) 법률 제15551호 공직선거법(시행 2018.4.6.)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⑦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④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본다.

국민투표에 있어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권자를 매수하는 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의 설치를 통해 이 법 위반행위 조사 업무 지원 및 공정한 선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이 중시되는 공직선거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필요한 국민투표는 제재·단속의 필요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도 「국민투표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규정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의 (사이버)공정국민투표
지원단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정선거지원단과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의 비교 》

구 분	공직선거법 제§10의2·10의3	개 정 안
명 칭	공정 선거 지원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공정 국민투표 지원단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
인 원	10명 이내 (5명 이상 10명 이하) 다만 선거 임박 시 추가 가능	10명 이하 (5명 이상 10명 이하)
기 간	상시	국민투표공고일 ~ 국민투표일 후 10일

2. 투표권(제2장)

현행	개정안
제7조(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8조(연령산정기준) 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제8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권이 있다. 제9조(나이산정기준) 투표권자의 나이는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0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투표권의 연령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국민투표법」상 투표권을 연동하는 것이 불필요한 개정 소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과거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법 개정¹⁰⁾을 통해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향한 바 있음.

10) 법률 제16864호 공직선거법(2020.1.14. 일부개정)

「대한민국헌법」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투표권의 나이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 관련 입법례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제3장)

가. 투표구 및 행정구역의 변경(제12조,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1조(투표구) 투표구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변경, 투표구의 변경 또는 제12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어도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12조(투표구) ① 투표구는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른 투표구로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5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국민투표에서는 그 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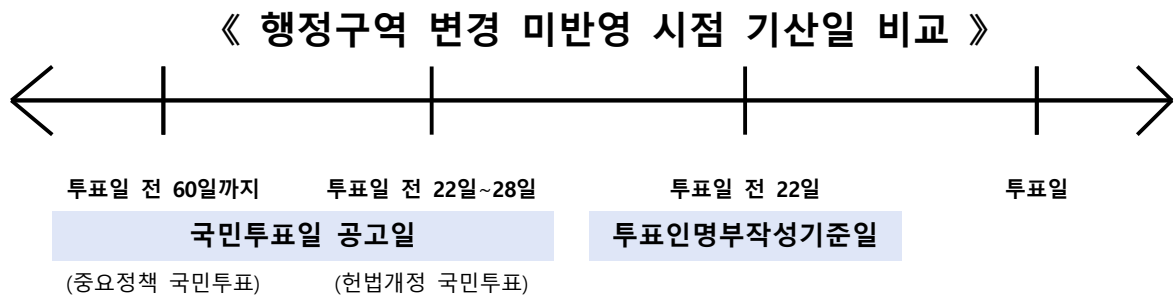
현행법은 투표구¹¹⁾를 연동하는 법률 제명을 과거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수정하고,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 공고는 공직선거에서 하는 바와 같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 변경 미반영 시점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산일¹²⁾을 “국민투표일공고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음.

11) “투표구”란 투표 관리를 위하여 편의에 따라 구분한 구역으로 한 선거구에 여러 개의 투표구를 둘 수 있음.(표준국어대사전)

12) “기산일”이란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을 의미함.(표준국어대사전)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투표일공고일”은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중요정책 국민투표) 또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헌법개정 국민투표)인데¹³⁾(안 제14조),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므로(안 제15조)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 국민투표일공고일보다 국민투표일에 가까움.



이는 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 변경 미반영 시점 기산일을 국민투표일에 가깝게 함으로써 보다 최신화된 행정구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과도 형평을 맞추려는 것으로 이해됨.

《 「공직선거법」상 입법례 》

제31조(투표구) ①읍·면·동에 투표구를 둔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면·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③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3) 헌법개정 국민투표일은 안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날)이므로 헌법개정 국민투표일공고일은 늦으면(30일에 해당하는 날이 화요일인 경우) 투표일 전 22일이고, 빠르면(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 투표일 전 28일임.

제32조(구역의 변경 등) ① 제37조(名簿作成)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의 구역·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제26조(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중 국회의원지역구명·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국민투표일의 공고(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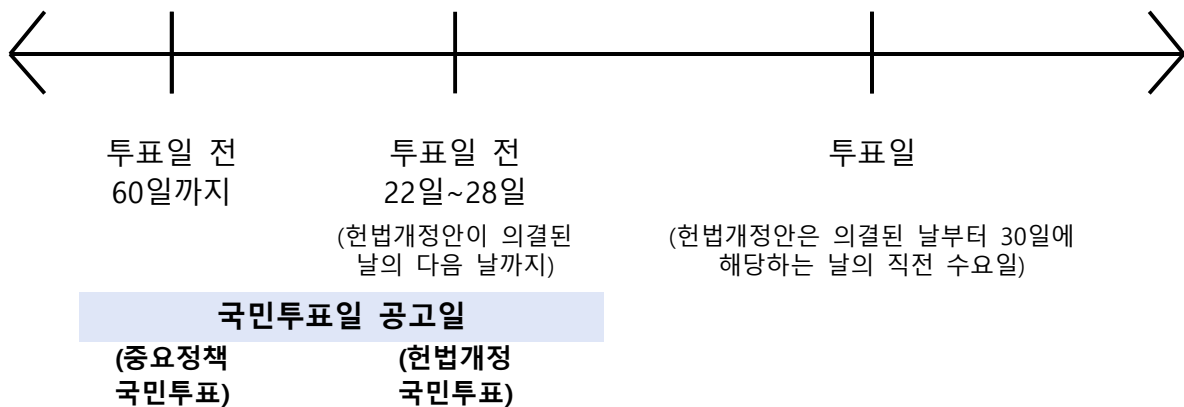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민투표일의 공고) 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u>중요정책</u> (이하 "중요정책"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대통령이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안과 함께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와,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 그 날)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투표일을 법정화하고,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함.

《 국민투표일의 공고 》



개정안은 국민투표의 유형에 따라 투표일과 투표일 공고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투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국회의 심사 및 의결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헌법개정안과 달리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함께 공고하게 되는데 해당 기간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인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⁴⁾

14) 국회의 심사 및 의결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헌법개정안과 달리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게 되는데, 해당 기간이 국민들에게 중요정책을 홍보하고 국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인지 검토가 필요함.

4. 투표인명부(제4장)

가. 투표인명부 작성 등(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읍·面の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개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제15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8조에 따른 투표권자(제54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거소투표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③구·시·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는 투표권자의 성명·주소·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 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표할 것을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를 포함한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이하 “<u>선상투표신고</u>”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	---

현행법은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기준일을 “국민투표일 공고일”로 하고, 대상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와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해서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 조항(현

행법 제14조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2014.7.24.)을 내린 바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에서 폐지된 국내 부재자신고제도를 두고 있고,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2013년까지는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 한해 투표용지를 발송하여 투표하는 부재자투표가 시행되었으나, 2014년 법 개정¹⁵⁾으로 사전투표제¹⁶⁾가 도입되며 거소투표¹⁷⁾와 선상투표,¹⁸⁾ 국외 부재자투표를 제외한 부재자투표 제도는 폐지됨.

이에 개정안은 투표인명부 대상에서 재외투표인명부에 관한 사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후술할 제10장(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에 별도로 두고, 「공직선거법」에서 부재자투표 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거소투표, 선상투표 관련 신고사항을 규정하면서 기존 부재자신고 관련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한편,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현행(국민투표일 공고일)과 달리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투표일 공고일은 개정안에 따르면 ①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경우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이고, ②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경우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28일

15) 법률 제12267호 공직선거법(2014.1.17.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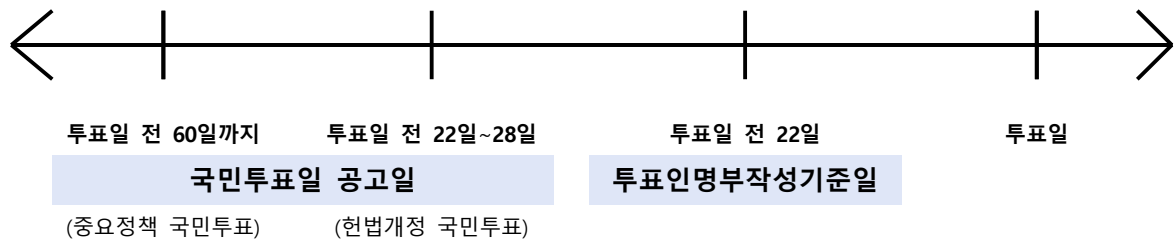
16) 사전투표가 기존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부재자투표가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 한해 가능했던 반면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데 있음.

17) “거소투표”란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의미함.(공직선거법 제38조)

18) “선상투표”란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투표를 의미함.(공직선거법 제38조)

까지 사이의 기간이므로 개정안의 기준일(국민투표일 전 22일)이 국민투표일에 보다 가까워 투표인명부를 최신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비교 》



참고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로 삼고 있음.

《 「공직선거법」상 입법례 》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교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나. 명부사본의 교부(제16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읍·면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에 <u>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政黨"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u> <u>확정된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일전일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투표인명부사본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및 비용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군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u>정치자금법</u>」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u>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된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명부"라 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1통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5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본작성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u>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명부사본의 교부대상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치자금법」 제27조19)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표준국어대사전)로서 「국회법」 20)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반면에,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의석이 없더라도 최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과 같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음.

19)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④·⑤ (생략)

20)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즉, 개정안은 명부사본 교부 대상을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교
섭단체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까지는 확대하
여 제공하려는 것으로 정당의 국민투표운동 목적의 명부사용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직선거법」상 입법례 》

-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 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제5장)

가. 정보의 제공(제18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③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정보의 제공) <u>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대상·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현행법은 국민투표안의 게시제도를 두어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국민투표안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당 게시제도는 「국민투표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규정된 것으로 통신·전자매체가 발달한 오늘날 벽보형태의 국민투표안 게시의 실효성은 과거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음. 주민투표의 절차 등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에서도 주민투표안의 게시제도 대신에 지

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 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민투표안 게시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법」과 개정안의 비교 》

주민투표법	개 정 안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의 제공)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대상·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제19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그 밖에 <u>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외에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국민투표공보(이하 “<u>점자형 국민투표공보</u>”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되, 국민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시·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u>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 공무원에게 국민투표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민투표공보(점자형국민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0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u> 1. <u>관할구역의 매세대:</u>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u>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u> 2. <u>제19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u> <u>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u> 3. <u>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인 :</u>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u>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u>
--	--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안의 주요 내용 등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도록 규정하여 재발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직선거법」과 같이 작성·발송 의무만을 규정하여 1회 발송을 전제로 하고 있음.

통신·전자매체가 발달한 오늘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의

용이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회 발송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및 발송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사항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 작성 의무(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 가능)와 군인·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보 발송 요청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국민투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임.

《 「공직선거법」상 입법례 》

제65조(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

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
마감일 후 3일까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
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
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
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
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6. 국민투표운동(제6장)

가. 정의(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정의) ① 이 법에서 “<u>국민투표에 관한 운동</u>”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정의) ① 이 법에서 “<u>국민투표운동</u>”이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국민투표운동(이하 “투표운동”이라 한다)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법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정의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민투표운동”의 정의로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행위 외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있음.

이는 투표용지 조항을 현행법은 찬성과 반대의 양란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53조), 개정안은 찬반 양란 외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임.

《 투표용지 조항 관련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제53조(투표용지) ① <u>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u> ② <u>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제39조(투표용지) ① <u>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u> ② <u>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다만,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유의미한 투표운동이 되므로²¹⁾ 국민투표운동의 정의에 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찬반 외에 투표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행위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공직선거법」상 입법례 》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u>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 5. 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헌법개정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가 요구됨.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나. 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運動"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7조(운동의 한계) 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서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2조(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①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 14일전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하는 방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투표운동을 금지하여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positive regulation)”²²⁾ 방식의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

반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negative regulation)”²³⁾ 방식의 규제로 전환함.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 선거운동의 자유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²⁴⁾에서 투표운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22)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의미함.(한경 경제용어사전)

23)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상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의미함.(한경 경제용어사전)

24) [헌법재판소 2011.12.20. 선고 2007헌마 1001등, 판례집 23-2하, 739]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 선거운동의 자유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탈법·금권적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이다. (중략)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헌재 2004. 3.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 434),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개별 투표운동 조항이 「공직선거법」을 참조하여 그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음. 「공직선거법」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을 명시²⁵⁾하고 있으나, 개별 조문에서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라는 평가²⁶⁾를 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반면에, 「주민투표법」의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을 명시하면서 제한되는 투표운동을 ①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 집회, ② 서명·날인행위, ③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 ④ 확성장치·자동차 사용제한 등 4가지 사항으로 한정하여 폭넓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음.²⁷⁾

25)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머니투데이(2019.7.10.), “선거운동 규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여야 공감”

미디어펜(2018.12.19.), “국회 정개특위, 선거운동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27) 「주민투표법」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①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의 비교 》

구 분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원칙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법 §58②) (법 §21②)	
선거운동 (투표운동) 제한	제7장(선거운동) 개별 조문에서 허용범위 제한	제3장(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법 §22(투표운동 제한)에서 제한
	§68(어깨띠 등 소품)	아래 4가지만 제한
	§79(공개장소 연설·대담)부터 §118(선거일 후 답례금지)까지	(야간호별방문, 서명날인, 연설금지장소 연설, 확정장치)
	제16장(벌칙)	제5장(벌칙)
	§230(매수 및 이해유도죄)부터 §262의3(선거범죄 포상금)까지	3개 조문만 규정 §28(벌칙)부터 §30(벌칙)까지

따라서, 개별 투표운동 조항에 대한 검토에 앞서 투표운동의 규율 방식, 규제 수준을 「공직선거법」과 유사하게 구성할 것인지, 「주민투표법」과 유사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구성할 것인지 총론적 측면에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과 유사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논거로는 ① “과열방지” 측면에서 국민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투표운동이 과열될 경우 국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② “동시 실시 감안” 측면에서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하면서 투표운동방법과 선거운동방법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규제를 이해하기 어렵고 법 위반이 심각해지며 단속이 어려워지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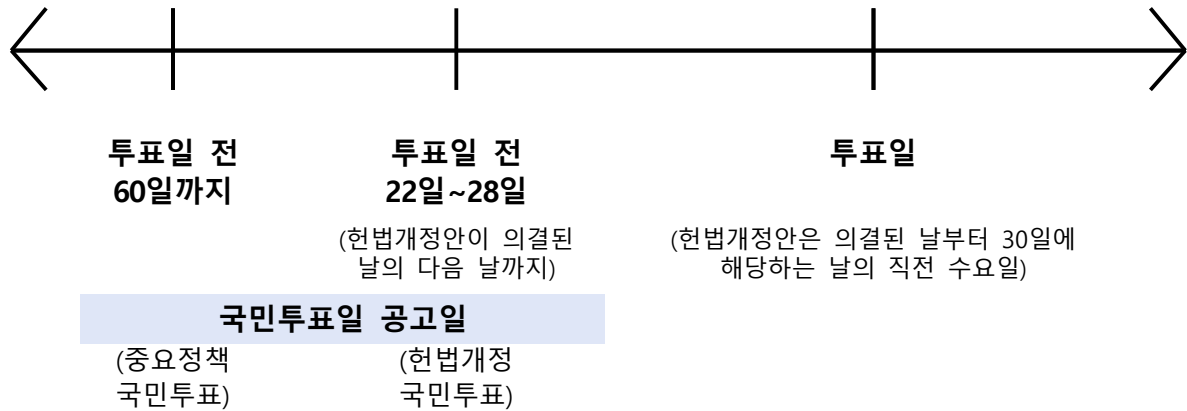
반면에 「주민투표법」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선거운동보다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거로는 ① “본질적 차이” 측면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와 정책에 대한 투표라는 국민투표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선거운동과 투표운동의 목적, 행위양태, 제한 필요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²⁸⁾ ② “직접민주주의” 측면에서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서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그 시행에 있어 일반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공론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투표운동 기간을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민투표일 14일 전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은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경우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이고,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경우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28일까지 사이에 공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투표운동 기간(국민투표일 14일 전~투표일 전일)은 현행보다 짧게 규정하려는 것임.

28) 방승주교수는 공직선거와 달리 국민투표는 투표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고, 송석윤교수는 선거운동과 투표운동은 같은 차원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임.

《 개정안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전 13일²⁹⁾)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규정한 것과 유사하게 규율한 것인데, 「주민투표법」은 투표운동기간을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규정³⁰⁾하고 있으므로 적정 투표운동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① 문자메시지 전송, ②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③ 전자우편 전송 등에 대해서는 투표운동기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참조한 것이나, 전화와 말(言)을 이용한 투표운동은 「공직선거법」과 다르게 투표운동기간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29)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요(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 선거기간개시일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요(공직선거법 제33조제3항) 후보자등록마감일이 선거일 전 19일이므로(공직선거법 제49조제1항) 선거일 전 13일이 선거기간개시일임.

30) 「주민투표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 「공직선거법」과 개정안의 비교 》

공직선거법	개 정 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	제22조(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①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 14일전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하는 방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	--

《 운동방법별 비교 》

운동방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자메시지 전송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전자우편 전송		
전화 이용	선거일 제외하고 상시	국민투표일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말(言)		

다. 개별 투표운동 관련 조항 검토

개별 투표운동 조항의 구체적인 규율방식에 대해서는 전술한 총론적 차원의 논의(「공직선거법」과 유사한 강한 규제 vs 「주민투표법」과 유사한 약한 규제)에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구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현행	개정안	
장 제목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6장 국민투표운동	제7장 선거운동
투표운동 정의	[§25] -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	[안 §21] -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	[§58]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투표운동 보지 않는 행위	-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 단순 의견개진, 의사 표시	(현행과 같음)	-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 입후보, 선거운동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기본원칙	[§27] - 원칙금지, 예외허용	[안 §22②] - 원칙허용, 예외금지	[§58②] - 원칙허용, 예외금지
운동기간	[§26] - 투표공고일~투표전일	[안 §22③] - 투표일 14일전~투표일 전일	[§59] - 선거기간개시일~선거일 전일
투표운동 상시허용	[규정 없음]	[안 §22③] - 문자메세지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59] - 예비후보자의 운동 - 문자메세지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전화 말로 선거운동(선거일 제외) - 후보자되려는 자 명함배부
		-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구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현행	개정안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8]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 외국인 -예비군 소대장 급 이상의 간부 -리·동·통·반장	[안 §23] -외국인 -미성년자 -선거범죄 등으로 투표권 없는 자 -공무원, 선관위·교육위 위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국민운동단체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선상투표신고 선박 선장	[§60] -외국인 -미성년자 -선거범죄 등으로 선거권 없는 자 -공무원, 선관위·교육위 위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국민운동단체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선상투표신고 선박 선장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규정 없음]	[안 §24]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국민운동단체 -법령에 정치활동 금지된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87]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따라 정치활동 금지된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후보자와 그 가족 관련 기관·단체

구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현행	개정안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전화·말을 이용한 운동	[규정 없음]	[안 §25, §36.7.] -전화(직접통화만 가능, 컴퓨터 이용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이용 금지/주간에 한함) -말 -위반시 형량 : ·향우회·중친화동창회 등 사회적모임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 설치 전화 이용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야간 전화 운동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82의4①]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가능 -위반시 형량 : · 선거기간 중 전화의 형태를 규율하는 규정 없음 · 야간 전화 운동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어깨띠·소품을 이용한 운동	[규정 없음]	[안 §26] -주체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어깨띠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콧,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위반시(규격위반)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68] -주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 -방법 :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콧,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옥내모임에서의 연설·대담	[규정 없음]	[안 §27] -주체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기간 :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방법 : 투표운동 목적 없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로 연설·대담 가능 -위반시 형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79⑦] -주체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기간 : 선거운동기간 -방법 :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로 연설·대담 가능 -위반시 형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구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현행	개정안	
투표운동 기구의 설치	[규정 없음]	[안 §28] -정당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1개소의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국민투표사무소에는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소장 및 유급사무직원,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준용	[§61의2] -정당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정당선거사무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 가능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정당(당원협의회)에 1,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정당(당원협의회)에 1,000만원 이하 벌금
인터넷광고	[규정 없음]	[안 §29] -주체 : 정당 -기간 :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대상 :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근거 및 광고주명 표시	[§82의7] -주체 : 후보자, 정당(대선 및 비례선거)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대상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광고” 표시
신문광고	[규정 없음]	[안 §29] -주체 : 정당 -기간 :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횟수 : 제한 없음 -광고근거 및 광고주명 표시	[§69] -주체 : 후보자 등 -대통령선거 : 7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 20회 이내 -시.도지사선거 : 5회 이내 -광고근거 및 광고주명 표시

구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현행	개정안	
방송광고	[규정 없음]	[안 §29] -주체 : 정당 -기간 :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 -횟수 : 제한 없음 -광고근거 및 광고주명 표시	[§70] -대통령선거 : 방송별 3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 방송별 15회 이내 -시·도지사선거 : 방송별 5회 이내 -광고근거 표시의무 없음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30] -주체 : 교섭단체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 -기간 : 투표운동기간 중 -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 각 3회 이내 -방송시설 통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통지 -방송사의 의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비용부담 : 국고	[안 §30] -주체 :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 -기간 :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 각 10회 이내 -방송시설 통지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시설과 일정을 정당에 통지 -방송사의 의무 :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해야 하며,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해야 함 -자막방송 또는 수어통역 가능 -비용부담 : 해당 정당	[§71] -주체 :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 -기간 : 선거운동기간중 -방법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이용 연설 -횟수 : 각 선거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1회~11회 이내
언론기관 등의 대담·토론회	[§31] -주체 : 교섭단체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 -주관 : 방송시설 경영자 -시간 제한 : 매회 120분 초과 금지 -의무개최 :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 별 2회 이상 개최 -신고 : 방송 방영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비용부담 : 방송시설 경영자	[안 §31] -개최 : 언론기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개최자는 찬성 또는 반대별로 공정하게 진행할 의무 -자막방송 또는 수어통역 가능 -비용부담 : 해당 언론기관 또는 단체 -장소 : 옥내로 제한	[§81,82] -개최 : 언론기관·단체 -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방법 : 대담·토론회 개최 및 보도 -비용부담 : 언론기관·단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규정 없음]	[안 §32] -주체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기간 :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초청대상 :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투표운동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중 찬성 또는 반대별 각각 2명씩 -횟수 : 1회 이상	[§82의2] -주체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기간 : 선거운동기간중 -초청대상 : 후보자, 정당 대표가 지명한 자 1명 또는 여러명 -횟수 : 3회 이상(대통령), 2회 이상(비례대표 국회의원), 1회 이상(시·도지사 등)

구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현행	개정안	
공개장소 연설(회) ·대담	[§32, §33] -개최 : 정당 -기간 : 투표운동기간 중 -방법 :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옥내 및 옥외 집회 실시 -무료사용 :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기타시설 -횟수 : 정당별 구·시(각 3회 이내), 군(읍·면수 이내)	<삭 제>	[§79] -주체: 후보자와 지정한 자 -방법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연설·대담 -무료사용 규정 없음 -횟수제한 없음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장장치 사용 가능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연설금지 장소	[§34] -연설금지장소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건물(§33 무료 사용 장소 제외)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승합자동차의 정차장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 및 기타 병원·문화·연구 시설	<삭 제>	[§80] -연설금지장소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제외)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등 의료·연구시설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소형인쇄물 의 배포	[§35] -누구든지 소형인쇄물 제작·배포 가능	<삭 제>	[규정 없음]
시설물·인 쇄물등의 설치·첩부 제한	[규정 없음]	[안 §34] -누구든지 이 법이 규정한 것 이외에 투표운동을 위한 다음 행위 금지 ·화환·풍선·현수막 등 광고물·시설의 설치 등 ·광고·벽보·사진·문서 등을 배부·첩부·상영 등 -다만, 다음 행위는 할 수 있음 ·정당의 사무소(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투표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설치하는 행위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90,93①] -선거일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음 행위 금지 ·화환·풍선·현수막 등 광고물·시설의 설치 등 ·표찰·표시물 배부 ·후보자 상징물 제작·판매 ·광고·벽보·사진·문서등을 배부·첩부·상영 등 [§95]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 등을 통상방법 외로 배부·살포할 수 없음

구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현행	개정안	
		-위반시 형량: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제한	[§36] -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투표운동 금지	[안 §36.10.] -이 법이 규정한 것 이외에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투표운동 행위 금지	[§91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회.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국민투표안 찬반의견 게재금지	[§37]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간행하는 관보·공보 등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게재할 수 없음	<삭 제> [안 §34]인쇄물 제한규정 [안 §24]단체의 투표운동 금지 규정으로 규율	[규정 없음]
허위방송·논평·보도 금지	[§38] -운동을 위하여 방송·간행물을 통한 허위 사실 선전·사실 왜곡 선전 금지	<삭 제> ※ [안 §103] 허위사실공표죄로 규율	[§96] -여론조사 왜곡공표 보도 금지 -언론기관등의 허위·왜곡사실 보도, 근거없는 투표결과 예측 보도 금지
	-위반시 처벌 규정 없음.		-위반시 형량 : 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②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 제한	[§39] -주체 : 누구든지 -목적 : 국민투표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대상 : 간행물을 경영·편집·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 -내용 : 금품·향응 기타 이익 제공 또는 의사표시 및 약속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논평 게재 금지	<삭 제> ※ [안 §87]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규율	[§97] -주체 : 누구든지 -목적 :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상 :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내용 :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금지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이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구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현행	개정안	
특수관계를 이용한 투표운동 금지	[§40] -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 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음	[안 §33] ①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② :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③ :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 할 수 없음 ④ :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85] ①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② :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③ :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 할 수 없음 ④ :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② : 5년 이하 징역 ③, ④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② : 5년 이하 징역 ③, ④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호별방문 금지	[§41] -누구든지 운동이나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방문을 할 수 없음	[안 §36.5] -누구든지 호별로 방문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 할 수 없음	[§106]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음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서명, 날인 운동을 통한 투표운동 금지	[§42] -누구든지 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음	[안 §36.6] -누구든지 법 규정 이외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107]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음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구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현행	개정안	
음식물 제공 금지	[§43]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명목으로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음	<삭 제> ※ [안 §87]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규율	[§ 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등에게 금전·물품·음식물등 제공·의사 표시·약속 금지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각종 연설회·집 회 등의 제한	[§44] -누구든지 운동기간중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향우회,아유회,동창회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안 §36.9] -누구든지 법 규정 이외에 연설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 할 수 없음	[§101]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불가 [§103] ②: 선거기간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모임 개최불가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아유회, 참가인원 25명 초과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불가 ④: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불가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101, §103③,④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103②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그 밖의 일반적 제한 규정	[규정 없음]	-법 규정 사항 외의 아래 행위 금지 [안 §36.1.]방송·신문·인터넷·언론통신 또는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이용 투표운동 금지	-법 규정 사항 외의 아래 행위 금지 [§98]누구든지 법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금지

구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현행	개정안	
		[안 §36.2.]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안 §36.3.] 법 규정 이외에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여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안 §36.4.] 다수인(5명을 초과한 인원을 말한다)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안 §36.8.]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안 §36.11.] 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행위	[§99]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92]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금지 [§105] 다수인(5명을 초과한 인원을 말한다)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인사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109]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100.] 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행위
		-위반시 형량 [안 §36.1.]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안 §36.2.] : 상동 [안 §36.3.] : 상동 [안 §36.4.] : 상동 [안 §36.8.] : 상동 [안 §36.11.]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94]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99] : 상동 [§92] : 상동 [§105] : 상동 [§109] : 상동 [§100]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등의 출장제한	[§45] -투표운동기간 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정상적 업무외 출장을 할 수 없음	<삭 제> ※ [안 §33]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조문으로 규율	[§86①6.] -선거기간 중 공무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 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정상적인 업무외 출장 불가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구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현행	개정안	
연설회장 소란행위 금지	[§46] -누구든지 연설회장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안 §35] -누구든지 법에 따른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폭행.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음	[§104]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장소, 대담 · 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 ·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 · 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음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야간연설 금지	[§47] -오후 11시 ~ 오전 6시 연설회 개최 제한	<삭 제>	[§102] -오후11시~오전6시 연설·대담·토론회 제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오후10시~오전7시 제한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특정인 비방의 금지	[§48] -누구든지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음	[안 §105]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함	[§250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25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형량 [§250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5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7. 투표(제7장)

가. 투표방법, 투표시간, 투표용지(제37조~제39조)

현행	개정안
제50조(투표방법) ①국민투표는 <u>기표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u> ②투표는 <u>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u>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u>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37조(투표방법) ① 국민투표는 <u>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u> ② 투표는 <u>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u> ③ 투표를 할 때에는 <u>투표인의 성명, 그 밖에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52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u>오전 6시에 열고 오후6시에 닫는다.</u>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장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는 투표일의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국민투표일 <u>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u>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u>사전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u> 이 경우 제1항 단서는 사전투표소에 준용한다.
제53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②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투표방법”과 관련하여 투표인의 성명만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투표인의 성명뿐 아니라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도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투표시간”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도입한 사전투표제를 국민투표에도 도입하여 사전투표소의 투표시간을 “국민투표 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전투표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의 연속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³¹⁾도 있으므로, 국민투표에 사전투표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투표용지”의 경우 찬반 양란만 두는 것은 헌법개정 및 양자택일의 국민투표만 전제로 한 것이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투표도 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투표용지 작성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31)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55호,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 「공직선거법」상 입법례 》

제146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 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⑥ (생략)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⑧ (생략)

⑨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합·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 ~ ⑧ (생략)

나. 투표절차의 준용규정(제4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각각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본다.

개정안은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국민투표법」에 반복해서 규정하지 않으려는 것임.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각각의 개별법에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주민투표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주민투표법」상 입법례 》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의 설치, 투표·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공직선거법」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개표(제8장)

가. 개표관리, 개표개시(제42조·제43조)

현행	개정안
제72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75조(개표개시)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 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투표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42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제43조(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개표관리”의 경우 개정안에서 현행법상 위원과반수 출석의무를 삭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개표절차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장(개표)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48조),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이 규정(법 제172조제3항³²⁾)되어 있으므로 실질적 차이는 없음.

“개표개시”의 경우 현행법은 일부 투표함 도착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 개시하는데, 개정안은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한 때부터 개표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공직선거에 적용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신속한 개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정 》

제95조의2(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나. 개표절차의 준용규정(제4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u>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1장(개표)을 준용한다.</u>

개정안은 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1장(개표)을 준용하도록 하여

32) 「공직선거법」 제172조(개표관리) ③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第1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국민투표법」에 반복해서 규정하지 않으려는 것임.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각각의 개별법에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주민투표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주민투표법」상 입법례 》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의 설치, 투표·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공직선거법」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무효투표(제45조)

현행	개정안
제78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찬성·반대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4. 찬성·반대 어느 난에 표를 한 것	제45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칸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칸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4. 어느 칸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합되지 아니한 것 또는 투표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져 있어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찬반의 구분란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物形)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u>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u>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합되지 아니한 것 ③ <u>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u>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투표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투표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같은 칸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3. 기표된 칸 외에 추가로 기표되었으나 추가로 기표된 것이 어느 칸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도장법으로 더럽혀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도장(손도장은 제외한다)의 날인, 성명의 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기표되었으나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7.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8.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9.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이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전투표
--	--

개정안은 무효투표의 판단기준(제1항)과 무효로 보지 아니하는 투표의 판단기준(제4항)을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조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도 도입함에 따라 해당투표의 무효투표 판단기준을 추가로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에서는 무효투표의 판단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은 전체 국민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개정안의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공직선거법
무효투표 판단기준 (제1항)	1. 정규 투표용지 미사용	1. (현행과 같음)
	2. 찬성·반대 모두 미표시	2. 어느 칸에도 미표시
	3. 찬성·반대 모두 표시	3. 2칸 또는 2 이상 칸에 표시
	4. 찬성·반대 어느 칸 식별 불가능	4. 어느 칸 표시 식별 불가능
	5. ○표 대신 문자 또는 물형	5. ☒표 대신 문자 또는 물형(物形)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
	<u><신 설></u>	7. 기표용구 아닌 용구로 표시
	7. 미봉합 우편투표 또는 투표인 본인 미확인된 것	부재자투표대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사항 별도 신설 (제2항, 제3항)
사전투표·거소투표·무효투표 판단기준 (제2항)	<u><신 설></u>	1. 정규의 회송용 봉투 미사용 2. 회송용 봉투 미봉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공직선거법
선상투표 무효투표 판단기준 (제3항)	<신 설>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번호가 아닌 번호 이용 전송 또는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투표인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최초 투표지 외의 것 3. 투표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 4. 표지에 찬성 또는 반대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표시된 것
무효로 하지 않는 투표 (제4항)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 메워져 있어도 기표용구 기표 명확	1.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 표 안 메워져 있어도 기표용구 기표 명확
	2. 동일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	2. 같은 칸에만 둘 이상 기표
	3. 기표란외에 기표라도 어느 난에 기표 명확	3. 기표된 칸 외에 추가로 기표됐으나 추가로 기표된 것이 어느 칸 기표로도 볼 수 없는 것
	4. 찬반 구분란선상에 기표됐으나 어느 난 기표 명확	4.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 어느 칸 기표 명확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난 기표 명확	
	*전사: 기표 후 잉크 덜 마른 상태에서 투표지를 반으로 접으면 반대쪽 다른 난에 잉크가 묻는 문제	
	6.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난 기표 명확 (*인육=인주=도장밥)	5. 도장밥으로 더럽혀졌으나 어느 칸 기표 명확
	<신 설>	6. 거소투표(선상투표 포함)의 경우 이 법 규정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기표됐으나 어느 칸 기표 명확
	<신 설>	7.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 날인
	<신 설>	8.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신 설>	9.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이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9.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사항(제9장, 제12장, 제13장)

가. 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포 등(제9장; 제49조, 제50조)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의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확정의 공포) 대통령이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49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①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국민투표결과를 공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대통령이 제49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확정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개정안에서 “투표권자”는 “국회의원선거권자”와 같기 때문에(안 제8조) 상기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³³⁾을 확인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현행법상 헌법개정의 확정을 위한 요건인 “국회의원선거권

33)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자(국내선거권자수 + 재외선거권자수)”의 숫자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공직선거법」은 2009년 법 개정³⁴⁾으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재외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재외선거권자수는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교부에서 격년으로 파악하는 재외국민수의 80%를 추정 재외선거권자수로 보고 있는데, 이 수는 재외선거인 등록 현황과 큰 차이를 보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수는 197만 4,375명이었는데 재외선거인 등록은 14만 7,989명에 그침.

《 재외선거인수 및 추정재외선거권자수의 비교 》

선 거 (실시년도)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			추정 재외선거권자 대비 투표율	
	선거인수 (재외선거인 등록수)	투표자수	투표율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투표율
제22대 국선 (2024)	147,989명	92,923명	62.8%	1,974,375명	4.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국,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한 현행법하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결과의 확정에 이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개정 국민투표 확정의 요건을 명확한 개념으로 변경(국회의원선거권자수→투표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하는 것이 바람직하

34) 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2009.2.12. 일부개정)

다고 보임.

다만, 헌법개정을 위한 요건(국회의원선거권자) 자체가 불분명하여 개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① 개정안의 “투표권자”의 개념을 헌법 문구와 동일하게 국회의원선거권자로 하되, 부연설명을 병기하는 방안[국회의원선거권자(투표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재외선거권자의 개념을 변경(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사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임.

나. 국민투표소송(제12장; 제70조, 제73조)

현행	개정안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u>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u>	제70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u>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u>
제95조(소송절차)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소송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45조·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20조·제225조 내지 제232조·제284조제1항·제285조 및 제288조의 규정은 준용	제73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제26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20조,

하지 아니한다.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84조제1항, 제285조 및 제288조를 제외한다.
----------	---

현행법은 국민투표무효 소송 제소의 요건을 “1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만명 이상의 서명”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1962년 법 제정 당시 해당 요건은 “5천인 이상의 찬성”이었는데, 1969년 폐지제정³⁵⁾되며 “1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상향된 이후 해당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소 제기 요건의 상향은 국민투표 효력의 안정성 확보, 소송 제기 권리의 보호, 인구수 변화³⁶⁾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³⁷⁾의 100분의 1

35) 법률 제2144호 국민투표법(1969.9.18. 폐지제정)

참고로, “폐지제정”이란 법령을 폐지하고 동일한 법령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을 의미함.(자료출처: 법제처, 법령정보관리 업무 편람, 2022)

36)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서 하락해 왔음. 1983년 처음으로 OECD 평균(2.11명)보다 낮은 2.06명을 기록하여 대체출산율(2.1명) 미만을 가리키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이래, 19년 만인 2002년에는 1.18명으로 초저출산(1.3명 미만) 상태에 진입함. 2007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13년 1.3명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18년에는 0.98명으로 1.0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0.81명까지 급락한 상태임. 이에 따라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음에도 오랜 기간 증가세를 유지해 왔던 총인구가 2021년부터는 마침내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1984년 40,405,956명으로 4천만 명대를 넘어서고, 2012년 50,199,853명으로 5천만 명대에 진입한 이후에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51,836,239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유재국·박선권,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국회입법조사처 NARS입법·정책 제146호(2023.12.29.), p.1.

37) 주민투표권자는 18세 이상의 주민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계속 거주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람을 포함하는데(주민투표법 제5조), 참고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주민투표권자는 838만 7천명이었음. (자료출처: KBS뉴스, 2011.8.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342108>)

이상의 서명을 요구함.³⁸⁾

한편,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현행법과 달리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³⁹⁾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국민투표 역시 공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 사안이므로 직권심리를 통해 법원이 필요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검토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공직선거법」상 입법례 》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제2항⁴⁰⁾ 및 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38) 「주민투표법」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소청인은 제1항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9)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40)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

다. 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등(제13장; 제75조, 제76조, 제78조)

현행	개정안
제97조(재투표)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u>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총집계를 다시 한 후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전에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에 명시가 없는 한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⑥ 대통령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한 확정공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⑦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시 투표	제75조(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투표의 <u>전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u>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5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6조(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u>일부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u> 투표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다음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일부 재투표에 있어서의 운동에 관하여는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9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또는 소실되어 국민투표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국민투표의 총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5일전에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민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④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결과를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이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전부무효에 따른 재투표”는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일 전 18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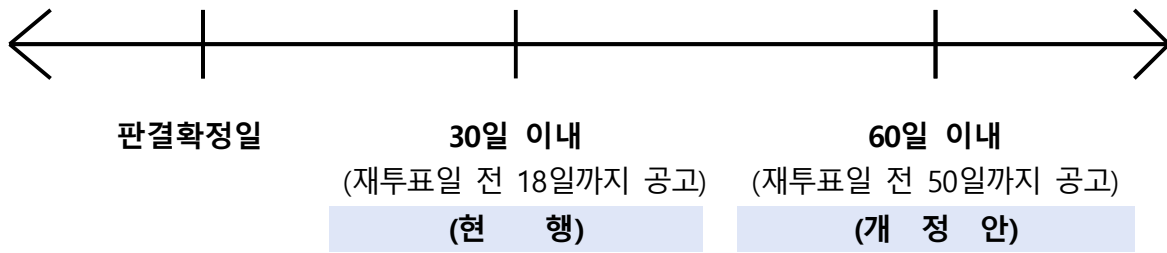
반면에, “일부무효에 따른 재투표”의 경우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동일하게 투표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는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재투표일 7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효에 따른 재투표 관련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전부무효	실시시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고일	재투표일 전 18일까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일부무효	실시시기	판결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공고일	재투표일 전 7일까지	

개정안이 일부무효에 따른 재투표와 달리 전부무효에 따른 재투표의 경우 재투표 실시시기는 늦추고(30일 이내→60일 이내), 공고일을 앞당긴 것은(투표일 전 18일까지→50일까지) 재외국민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전부무효 재투표 시점 비교 》



다만, 해당 기간이 재외국민투표를 원활히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는 담당부처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간에 대해 재외국민투표의 준비와 실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한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경우 현행법은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일 전 5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일 전 7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부 투표구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부무효에 따른 재투표와 차이가 없으므로, 일부무효에 따른 재투표의 실시시기, 공고일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10.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제10장)

가. 개괄

과거에는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였으나,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44)으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 2009년 「국민투표법」 개정 전·후 비교 》

법률 제4796호 국민투표법 (1994.12.22. 타법개정)	법률 제9467호 국민투표법 (2009.2.12. 일부개정)
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u>국민투표일공고일</u>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u>국민투표일공고일</u>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시 「공직선거법」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여 「국민투표법」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44)을 받았고, 국내거소신고한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전·후 비교 》

법률 제8879호 공직선거법 (2008.2.29. 일부개정)	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2009.2.12. 일부개정)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군·面의 長”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u>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u>”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u>選舉人名簿作成期間</u>”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9일(이하 “<u>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u>”이라 한다) <u>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u>(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장의2에 따라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교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이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는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재외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민투표법」과 차이가 있음.

재외선거제도 중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한 재외선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 가능하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한 재외선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도입된 재외선거제도 》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으로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현행법에 대하여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동일한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마644)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재외선거제도 도입 vs 재외투표제도 미도입)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큼.

나. 세부사항 검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는 크게 ①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안 제51조), ②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안 제52조), ③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작성과 확정(안 제53조·제54조), ④ 국외투표운동 방법에 대한 특례(안 제55조), ⑤ 재외투표소의 투표(안 제56조)로 구성되어 있음.

중요정책 또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면 대통령의 국민투표일 및 국민투표안의 공고가 이루어지는데, 개정안은 국민투표일(중요정책 국민투표) 또는 헌법개정안(헌법개정 국민투표)을 공고한 날 공직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후의 절차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동일하게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가 확정되면 이에 기초하여 재외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상기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에 따른 재외투표 진행 과정 》

절 차	시 기
헌법개정안 제안시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헌법 제129조)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
↓	
대통령의 국민투표일(안) 공고	-중요정책: 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 -헌법개정: 국회 의결된 날 다음 날까지 공고
↓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중요정책: 국민투표일 공고한 날 -헌법개정: 헌법개정안 공고한 날 (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
↓	
국외부재자신고/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중요정책: 투표일 전 60일~ 40일 -헌법개정: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간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명부/재외투표인명부 작성: 신청 만료일 다음날부터 7일간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투표인명부 확정	-부재자신고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 확정: 작성 만료일의 다음날
↓	
재외투표소 운영	국민투표일 전 14일 ~ 국민투표일 전 9일 기간 중 6일 이내
↓	
국민투표	-중요정책: 투표일 전 60일까지 투표일 공고 -헌법개정: 국회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

이 중 투표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절차는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하 “국외부재자신고등”이라 함)이라 볼 수 있는데, 개정안은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신고등 기간을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간”으로 규정(안 제52조 제3항)하고 있고, 공고한 날부터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안 제51조제1항)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 제129조41)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하기만 하면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외부재자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반면에,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재외투표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 현행 헌법상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30일 이내에 국외부재자신고등과 명부작성 및 확정, 재외투표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41)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소위원회 회의록(2018.2.21.) 내용 》

- 전문위원 정성희** 소위원장님 잠깐.....선관위에서 작업을 하시는 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략)
제가 여기에 별지로 설명드렸던 그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헌법개정안 의결 전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기 전부터 명부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 황영철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선관위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낼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국회의 의결이 끝나야 그것은 절차가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그런 쪽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이용호 위원** 저도 황영철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어차피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되면서 해외 재외국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의 편의성이나 혹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아마 그런 고충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영철 위원** 저도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나 함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개정 의견이 그렇습니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난 뒤에 재외선거 절차가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5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마는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가 되고 나면 저희들은 그때부터 재외선거 절차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나 공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 헌법 개정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결국, 이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현실적으로 재외투표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헌법개정안의 제안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총 2건(대통령 발의 1건, 의원발의 1건)으로 모두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되었음.

《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제안된 헌법개정안 》

구분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자	의결결과
1	제2012670호	대통령(문재인)	2018.03.26.	2018.05.24. 114명 투표 (재적 2/3 미달, 투표 불성립)
2	제2024795호	강창일의원 등 148인	2020.03.06.	2020.05.08. 118명 투표 (재적 2/3 미달, 투표 불성립)

11.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11장)

가. 동시실시의 필요성 및 정의(제6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동시실시의 정의) 이 법에서 “동시 실시”란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은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⁴²⁾에 따른 선거(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투표와 공직선거 모두 국민의 투표가 주된 행위이며, 이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유권자의 시간절약을 통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고, 투표소 운영, 인력 배치, 장비 설치 등 관리사무에 소요되는 중첩적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42)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나. 세부사항 검토

개정안의 동시 실시 특례 관련 주요 내용으로 ① 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안 제63조), ② 투표운동기구 및 국민투표공보 작성에 관한 특례(안 제64조·제65조), ③ 국외부재자명부 및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안 제66조·제67조), ④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안 제67조)가 있는데, 개별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4장(동시 선거에 관한 특례)의 관련 조항을 참조한 것으로 보임.

위 네 가지 주요 내용 중 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되는 업무 또는 보상금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경비를 절감하려는 취지임.

한편, 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 제한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국민투표에서도 규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 중 「공직선거법」 규정과 다른 내용은 공직선거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제한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민투표참여 또는 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참여 거부의 권유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공직선거법」과 개정안의 비교 》

공직선거법	개 정 안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장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3조(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참여 또는 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유의미한 투표운동이 되므로⁴³⁾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제한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투표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도 제한하려는 것임.

43) 헌법개정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가 요구됨.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참고로,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의 동시실시가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투표에만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라 동시선거에서 선거인이 일부 선거의 투표를 거부하는 경우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투표를 거부하는 선거의 투표지를 회수하고 그 상황을 투표록에 기재한 후 미투표로 처리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하나의 투표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12. 보칙(제14장)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제8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1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① <u>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사람</u>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u>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u>지체 없이 이</u>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u>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u>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u>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④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u>그 밖</u>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등

에게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조항(제82조의4제3항~제7항)을 참조한 것으로, 국민투표운동 과정에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임.

《 「공직선거법」상 입법례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④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제한·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2.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⑦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조문 중 제6항(고지제도)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 법 개정⁴⁴⁾을 통해 추가로 도입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 거부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등이 관련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한 것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달리 볼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조항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제8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2조(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① <u>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u>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전화번호·이

44) 법률 제17127호 공직선거법(2020.3.25. 일부개정)

	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u>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 기지국 위치정보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u>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전송 건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u>요청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u>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u>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u>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	---

개정안은 통신관련 국민투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공직선거법」상 조문(제272조의3)을 참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자료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통신관련 국민투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 라고 보임.

《 「공직선거법」상 입법례 》

-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조문 중 제5항·제6항(고지제도)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⁴⁵⁾의 보호를 위하여 2020년 법 개정⁴⁶⁾을 통해 추가로 도입된 것으로, 통신자료가 제공된 이용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한 것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달리 볼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조항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함.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헌법재판소 2012.7.26. 선고 2010헌마446, 판례집 24-2상, 248)

46) 법률 제17127호 공직선거법(2020.3.25. 일부개정)

13. 벌칙(제15장)

가. 개괄

「공직선거법」의 경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정형이 정비되어 온 반면, 「국민투표법」은 법 개정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과거의 물가 수준에 맞춰 규정된 벌금형이 과도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는 등(가령, 법 제99조제1항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법정형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유사 벌칙을 기준으로 벌칙 수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률간 처벌규정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처벌규정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논의는 국민투표운동의 규제 수준(「공직선거법」과 유사한 강한 규제 vs 「주민투표법」과 유사한 약한 규제)과 연계되는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개별 벌칙 조항 검토

개별 벌칙 조항의 구체적인 규율방식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투표운동의 규제 수준에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과 유사하게 규제하는 것을 전제로 벌칙조항을 정비하고 있음.

(참고: [↓]: 이하, [↑]:이상, [:]또는 [&]:그리고)

죄명	현행	위반행위	위반자	개정안	공직선거법 형량
매수 및 이해 유도죄	[§99①] 3년↓징역, 150만원↓벌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를 하게 목적으로 투표 권자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누구든지	[§87①] 5년↓징역, 3천만원↓벌금	[§230①] 5년↓징역, 3천만원↓벌금
	[§99②] 7년↓징역,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국민 투표관계 공무원, 경찰공무원	[§87②] 7년↓징역	[§230⑤] 7년↓징역
지시· 알선·권유	[§99①] 3년↓징역, 150만원↓벌금	상기 행위 지시. 알선. 권유	누구든지	[§87①(3)] 5년↓징역, 3천만원↓벌금	[§230③] 7년↓징역, 5천만원↓벌금
투표자유 방해죄	[§102①] 5년↓징역,금고, 50만원↑ 250만원↓벌금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 또는 유인, 불법으로 체포,감금	누구든지	[§89①] 10년↓징역, 500만원↑ 3천만원↓벌금	[§237①] 10년↓징역, 500만원↑ 3천만원↓벌금
	[§102②] 1년↑10년↓ 징역,금고 5년↑ 자격정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 방해	검사, 경찰공무원,군인	[§89②] 1년↑10년↓ 징역& 5년↓ 자격정지	[§237②] 1년↑10년↓징역& 5년↓ 자격정지
연설. 대담장소 대담. 토론회장	[규정 없음]	위험한 물건을 던지 거나 연설원을 폭행	주모자	[§89③(1)] 5년↑ 유기징역	[§237③(1)] 5년↑ 유기징역
			다른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사람에 앞장 서서 행동	[§89③(2)] 3년↑ 유기징역	[§237③(2)] 3년↑ 유기징역
			부화하여 행동	[§89③(3)] 7년↓징역	[§237③(3)] 7년↓징역

죄명	현행	위반행위	위반자	개정안	공직선거법 형량
군인에 의한 투표자유 방해죄	[§103] 3년 ↑ 징역, 금고	투표운동을 하기 위 하여 그 휘하 군인, 군무원의 투표권행사 를 폭행,협박으로 방 해	군인	[§90] 1년 ↑ 10년 ↓ 징역 & 5년 ↓ 자격정지	[§238] 1년 ↑ 10년 ↓ 징역 & 5년 ↓ 자격정지
직 권 남 용 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104] 7년 ↓ 징역, 금고	투표인명부의 열람 방해, 그 직무 유기 등 직권남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경찰 공무원, 기타 관계공무원, 투 표인명부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	[§91] 7년 ↓ 징역	[§239] 7년 ↓ 징역
선장등에 의한 투표자유 방해죄	[규정 없음]	-선상투표신고, 선상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 지에 서명을 거부 -다른사람의 선상투 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 -선상투표자에게 찬 성하거나 반대하도 록 강요 -선상투표소에서 투 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권유	선장 또는 입회인	[§92①] 1년 ↑ 10년 ↓ 징역	[§239의2①] 1년 ↑ 10년 ↓ 징역
선장등에 의한 투표자유 방해죄	[규정 없음]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 에게 알리지 아니 하거나 선상투표소 를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선상투표소 설비규정을 위반함 -입회인을 입회시키 지 아니하거나, 선 상투표용지와 선상 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함 -법을 위반하여 선상 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아니 하거나 선상투표용 지, 선상투표지봉투 를 제출하지 아니함	선장	[§92②] 10년 ↓ 징역, 500만원 ↑ 3천만원 ↓ 벌금	[§239의2②] 10년 ↓ 징역, 500만원 ↑ 3천만원 ↓ 벌금

죄명	현행	위반행위	위반자	개정안	공직선거법 형량
국민투표안 등에 대한 방해죄	[§105①] 2년↓징역, 금고, 100만원↓ 벌금	현수막, 그 밖의 선 전시설의 작성·게시. 처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사람	누구든지	[§93①] 2년↓징역, 400만원↓ 벌금	[§240①] 2년↓ 징역, 400만원↓ 벌금
	[§105②] 5년↓징역,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 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경찰공 무원	[§93②] 3년↓징역, 600만원↓ 벌금	[§240②] 3년↓ 징역, 600만원↓ 벌금
국민투표안 등의 부정작성죄	[§106] 3년↓징역, 금고, 150만원 ↓ 벌금	국민투표안, 공보 및 벽보를 부정하게 작성·첨부 또는 배 부, 정당한 이유없 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 사무에 종사하 는 자	[규정 없음]	[§240③] 3년↓ 징역, 600만원↓ 벌금
투표의 비밀침해죄	[§107①] 2년↓징역, 금고, 100만원↓ 벌금	-투표의 비밀침해 -투표한 또는 투표 하고자 하는 내용 의 표시 요구	누구든지	[§94①] 3년↓ 징역, 600만원 ↓ 벌금	[§241①] 3년↓ 징역, 600만원↓ 벌금
	[§107②] 7년↓징역, 금고	-투표결과를 예상하 기 위하여 투표소 로부터 50미터 이 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경찰 공무원·군인, 기 타 공무원	[§94②] 5년↓ 징역	[§241②] 5년↓ 징역
투표나 개표 의 간섭죄	[§108①] 3년↓징역, 금고	투표나 개표에 간섭,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누구든지	[§95①] 3년↓ 징역	[§242①] 3년↓ 징역
	[규정 없음]	개표소에서 개표참 관인이 설치한 통신 설비를 파괴, 훼손		[§95②] 5년↓ 징역	[§242②] 5년↓ 징역
	[§108②] 7년↓징역, 금고	-정당한 이유없이 투 표나 개표에 간섭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검 사·경찰공무원, 군인, 국민투표 사무에 관계있 는 공무원	[§95③] 1년↑10년↓ 징역	[§242③] 1년↑10년↓ 징역
공무원의 재외투표 간섭죄	[규정 없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재외 선거관리위원이나 공무원에게 투표사 무처리 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공무원	[§96①] 3년↓ 징역, 600만원↓ 벌금	[§242의2①] 3년↓징역, 600만원↓ 벌금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공무원에 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		[§96②] 1년↑ 5년↓ 징역	[§242의2②] 1년↑5년↓ 징역

죄명	현행	위반행위	위반자	개정안	공직선거법 형량
투표함 등에 관한 죄	[§109①] 1년↑7년↓ 징역 금고	법령에 의하지 아니 하고 투표함을 열거 나, 투표함 안의 투 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탈취	누구든지	[§97①] 1년↑ 10년↓ 징역	[§243①] 1년↑10년↓ 징역
	[§109②] 1년↑10년↓징역 금고		검사.경찰공무 원.군인	[§97②] 2년↑10년↓ 징역	[§243②] 2년↑10년↓ 징역
국민투표사무 관계자나 시 설 등에 관한 폭행교란죄	[§110] 7년↓ 징역, 금고, 50만원↑ 350만원↓ 벌금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직원, 국민투표 사무 관계 공무원 에게 폭행.협박 -투표소.개표소 교란 -투표용지.투표인명 부 기타 국민투표 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훼손.탈취	누구든지	[§98] 1년↑ 10년↓ 징역, 500만원↑ 3천만원↓ 벌금	[§244①] 1년↑10년↓ 징역, 500만원↑ 3천만원↓ 벌금
투표소 등에 서의 무기휴 대죄	[§111①] 5년↓징역, 금고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 대하고 투표소나 개 표소에 함부로 들어 감	누구든지	[§99①] 7년↓ 징역	[§245①] 7년↓ 징역
	[규정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흉기 등을 지 니고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에 들 어감	누구든지	[§99②] 3년↓ 징역, 600만원↓ 벌금	[§245②] 3년↓ 징역, 600만원↓ 벌금
다수인의 투 표방해죄	[§112①(1)] 3년↑ 유기징역 금고	다수인이 집합하여 투표방해행위	주모자	[§100(1)] 3년↑ 유기징역	[§246①(1)] 3년↑ 유기징역
	[§112①(2)] 1년↑10년↓징역 금고		타인을 지휘하 거나 타인에 술 선하여 행동한 자	[§100(2)] 2년↑10년↓ 징역	[§246①(2)] 2년↑ 10년↓ 징역
	[§112①(3)] 1년↓ 징역, 금고, 50만원↓ 벌금		부화하여 행동 한 자	[§100(3)] 5년↓ 징역	[§246①(3)] 5년↓ 징역
	[§112②] 5년↓징역, 금고	투표방해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함	주도적행위를 한 자	[규정 없음]	[§246②] 5년↓ 징역
	[§112②] 6월↓징역, 금고, 30만원↓ 벌금		그 밖의 자		[§246②] 1년↓ 징역, 200만원↓ 벌금

죄명	현행	위반행위	위반자	개정안	공직선거법 형량
사위등재. 허위날인죄	[§113①] 6월↓징역, 금고, 30만원↓ 벌금	-거짓으로 투표인명 부(거소·선상투표인 명부 포함)에 오르 게 한 사람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 선상투표신고 및 국외부재자신고 를 하거나 재외선 거인 등록신청 또 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사람 -투표인명부에 허위 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 은 사람	누구든지	[§101①] 3년↓ 징역, 500만원↓ 벌금	[§247①] 3년↓ 징역, 500만원↓ 벌금
	[§113②] 3년↓징역, 금고	투표인 명부에 고의 로 투표권자를 기재 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	투표인명부작성 에 관계있는 공 무원	[§101②] 5년↓ 징역, 1천만원↓ 벌금	[§247②] 5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사위투표죄	[§114①] 2년↓징역, 금고, 100만원↓ 벌금	-성명을 사칭 -기타 사위의 방법 으로 투표 -투표인이 아닌 자 가 투표	누구든지	[§102①] 5년↓ 징역, 1천만원↓ 벌금	[§248①] 5년↓ 징역, 1천만원↓ 벌금
	[§114②] 5년↓징역, 금고	상기행위를 하거나 하게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투표 사무 관계 공무 원	[§102②] 7년↓ 징역	[§248②] 7년↓ 징역
투표위조 또 는 증감죄	[§115①] 1년↑7년↓ 징역, 금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	누구든지	[§103①] 1년↑ 7년↓ 징역	[§249①] 1년↑ 7년↓ 징역
	[§115②] 1년↑10년↓ 징역,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투표 사무 관계 공무원	[§103②] 3년↑10년↓ 징역	[§249②] 3년↑10년↓ 징역

죄명	현행	위반행위	위반자	개정안	공직선거법 형량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규정 없음]	-방송·신문 등에 의 한 광고금지 위반 -신문·통신·잡지 등 의 통상방법 외 배 부 등 금지 위반 -투표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위반	누구든지	[§104①] 3년↓ 징역, 6백만원↓ 벌금	[§252③] 3년↓ 징역, 6백만원↓ 벌금
	[규정 없음]	공평하게 중계방송, 편집 없이 중계방송 할 의무 위반	종합유선방송사 업자(보도 전문 편성의 방송채 널 사용 사업자 포함)·중계유선 방송사업자·인 터넷언론사	[§104②] 2년↓ 징역, 4백만원↓ 벌금	[§252④] 2년↓ 징역, 4백만원↓ 벌금
허위사실공표 죄	[규정 없음]	국민투표결과에 영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방송·신 문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105] 5년↓ 징역, 3천만원↓ 벌금	[§250①] 5년↓ 징역, 3천만원↓ 벌금
특정인비방죄	[§117] 3년↓ 징역, 금고, 150만원↓ 벌금	국민투표결과에 영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연히 사실 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	누구든지	[규정 없음]	[§251] 3년↓ 징역, 500만원↓ 벌금
투표운동기간 위반죄 등	[§118] 2년↓ 징역, 금고, 100만원↓ 벌금	투표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투표운 동	누구든지	[§106③1.] 3년↓ 징역, 600만원↓ 벌금	[§254①] 3년↓ 징역, 600만원↓ 벌금
		투표운동기간 전 투 표운동		[규정 없음]	[§254②] 2년↓ 징역, 400만원↓ 벌금
참관인의 의 무해태죄	[§119] 50만원↓ 벌금	투표참관인이 정당 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	선거관리위원회 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	[§108⑤1.] 100만원↓ 과태료	[§261⑧1.] 100만원↓ 과태료
국 민 투 표 에 관한 범죄선 동죄	[§121] 3년↓ 징역, 금고, 150만원↓ 벌금	벽보·신문·잡지 이용 기타 방법으로 국민 투표에관한 죄를 범 할 것을 선동	누구든지	[규정 없음]	[§259] 3년↓ 징역, 600만원↓ 벌금

죄명	현행	위반행위	위반자	개정안	공직선거법 형량
각종제한위반죄	[§116] 2년 ↓ 징역, 100만원 ↓ 벌금	*각종제한위반죄' 참조 (p.108)		[§106①] 5년 ↓ 징역	[§256①] 3년 ↓ 징역, 600만원 ↓ 벌금
				[§106②] 5년 ↓ 징역, 2천만원 ↓ 벌금	[§256②] 2년 ↓ 징역, 1천500만원 ↓ 벌금
				[§106③] 3년 ↓ 징역, 600만원 ↓ 벌금	[§256③] 2년 ↓ 징역, 400만원 ↓ 벌금 (④ 포함)
	[§106④] 2년 ↓ 징역, 400만원 ↓ 벌금 (⑤ 포함)			[§256⑤] 1년 ↓ 징역, 200만원 ↓ 벌금	
	[§106⑥] 1년 ↓ 징역, 200만원 ↓ 벌금				
기타 과태료 처분 관련	[규정없음]	*기타 과태료 처분관련 참조' (p.109)		[§108①] 1천만원 ↓ 과태료	[§261①] 5천만원 ↓ 과태료
					[§261②] 3천만원 ↓ 과태료
				[§108②] 500만원 ↓ 과태료	[§261③] 1천만원 ↓ 과태료
				[§108③] 300만원 ↓ 과태료	[§261④] 500만원 ↓ 과태료
				[§108④] 200만원 ↓ 과태료	[§261⑥] 300만원 ↓ 과태료
					[§261⑦] 200만원 ↓ 과태료
				[§108⑤] 100만원 ↓ 과태료	[§261⑧] 100만원 ↓ 과태료

★각종제한위반죄

형량	개정안	처벌 대상	공직선거법 형량
5년 ↓ 징역	\$106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한 사람	[§255③2.] 동일형량
5년 ↓ 징역, 2천만원 ↓ 벌금	\$106②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국민투표에 영향	[§255⑤] 동일형량
3년 ↓ 징역, 600만원 ↓ 벌금	\$106③	국민투표일에 투표운동을 한 사람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및 단체)의 투표운동 어깨띠나 소품 등의 규격 범위를 위반 투표운동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람의 대담·토론회 직무상 행위를 이용, 특수한 지위 이용 투표운동 교육적 특수관계 투표권이 없는 자에 대해 투표운동 미규정 방법으로 저술·연예·연극·영화 배부·공연·상영 다수인(5명 초과)이 무리지어 행진, 연달아 소리 투표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한 사람 투표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사람 야간에 전화 이용 투표운동 국외투표운동방법을 위반	[§255①] 동일형량
2년 ↓ 징역, 400만원 ↓ 벌금	\$106④,⑤	투표인명부 작성 사무 등을 방해 투표인명부를 열람·사용 유출한 사람 투표인명부 사본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위법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투표운동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질서 문란, 진행 방해 연설회 등 집회를 개최하여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 사용 투표운동 법에 따른 방법 제외 녹음기·녹화기 사용 투표운동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참관인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을 위반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위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개표소의 출입제한 등을 위반 공직선거법 미허용 방법으로 국민투표참여 권유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제한 요청 받고 미이행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 시기, 수량 규정 위반	[§255②, §256 ③④] 동일형량
1년 ↓ 징역, 200만원 ↓ 벌금	\$106⑥	다른 사람 개최한 옥내모임에 확성장치로 연설·대담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고정된 장소에 두지 않는 자	[§256⑤] 동일형량

***기타 과태료 처분관련**

구분	과태료	개정안	부과 대상	공직선거법 과태료
투표시간 미보장	1천만원 ↓	§108①	피고용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고용자	[§261③1.] 동일 금액
투표소 등 장소협조 불응	500만원 ↓	§108②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협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학교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	[§261④] 동일 금액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미신고	300만원 ↓	§108③1.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의 명칭·이용일시 등을 방송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당	[§261⑥1.] 동일 금액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등 불응		§108③2.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위법 게시물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 요청 받고 미이행한 자 (2회 이상 미이행은 2년 ↓ 징역, 400만원 ↓ 벌금)	[§261⑥4.] 동일 금액
통신관련 선거범죄 자료제출 불응		§108③3.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신관련 선거범죄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61⑥1.] 동일 금액
신고·제출 의무 해태	200만원 ↓	§108④1.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에 규정된 신고·제출의 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	[§261⑦1.] 동일 금액
투표사무원 등 추천협조 불응		§108④2.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 등의 추천협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 및 각급학교의 장	[§261⑦2.사] 동일 금액
기관·시설의 기표소 설치의무 위반		§108④3.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은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장	[§261⑦2.아] 동일 금액
투표용지모형 훼손		§108④4.	공고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오손한 사람	[§261⑦4.] 동일 금액
자체선정 투표참관인 참관 거부·해태	100만원 ↓	§108⑤1.	선거관리위원회·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261⑧1.] 동일 금액
투표사무원 직무수행 거부·유기·해태		§108⑤2.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자	[§261⑧2.바] 동일 금액

문 의 처
02)6788-5332